

山林의 定義에 對한 研究

建國大學校 池 鏞 夏

Studies on definition of forest-Law

YOUNG HA CHI

一. 研究의 目的

法이란 것은 人間의 社會生活에서 秩序維持와 義務의 配分 또는 協力을 律定한 規範인 까닭에 法の 實施에는 그 效果를 確保하기 爲하여 社會的強制力을 保有하고 있음으로 國家는 構成權力에 依하여 國民에게 法の 遵守를 要求하는 強制力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法施行上에 隨伴되는 違法行爲는 犯罪性을 同時에 隨伴하는 것이니 犯罪은 犯罪成立의 通行性에 依하여 規定된다고 하지 單은 犯罪의 根本要因은 違法에 있고 執行된 行爲에 依하여 成立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犯罪은 國家에서 公布한 法律의 遵守와 履行을 違反한 데서 成立되는 것이니 違法 行爲에는 違法條文을 提示하여 確認됨으로써 犯罪가 成立되는 것이다. 法은 萬人에 平等한 同時 違法者는 犯罪者라는 烙印을 찍혀 社會的地位 名譽等에 打擊을 주는 同時에 財產上 또는 身體上의 自由를 拘束 하여 國民의 基本權利를 制限하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한다. 그러므로 犯罪에는 違法이 前提條件이며 違法은 該當 法條文의 適用 範圍內에 屬하는 犯法 行爲라야 犯罪가 成立 되는 것이니 犯罪의 規範的存在인 法條文은 가장 神聖 嚴正하고 公平하며 缺點없는 適用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法을 制定하는 것은 法の 制定精神과 國家目標에 依하여 實效를 거둘수 있는 同時에 法の 適用을 嚴正히 하기 爲하여 法の 定義를 明示할 必要性이 있다. 法の 運營은 恒常 慎重을 期하며 法에 的中되고 該當되는 運營을 할 것이며 法の 制定面에서도 恒常 慎重을 期하지 않으면 法制定의 本來精神과 目標에 違背되는 結果를 惹起하거나 또는 無고한 國民을 犯罪者의 累名과 刑罰을 加

하여 法の 執行上 不本意의 混亂을 招來하는 수가 있어 이와 같은 法은 所期의 目標을 達成 하기 困難할뿐 外라 法을 背景으로 하는 官僚主義는 不正과 腐敗의 溫床을 造成할 念慮가 없지 않다. 以上을 要約한다면 法の 適用性이라는 것은 義務履行者의 法的行爲가 國家目標과 秩序維持上 法에 抵觸되며 犯法을 構成한다면 이는 반드시 法條例의 根據가 確實히 構成되어야 犯罪搜查가 始作 된다. 假想 伐木行爲가 山林法上으로 불며 犯法이 되고 안되는 與否를 檢討한 다음에 搜查가 始作 될 것이다. 山林法上의 違法 與否는 반드시 法條項의 解釋과 條文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運營者의 裁量은 絕對 禁物이다. 이와같이 重要한 山林法의 法條項은 違法의 限界確定에 가장 明確하여야 하며 嚴正하여야 할 것이기에 山林法에서는 山林의 定義를 條項으로 設定하고 明示한바 있으나 그 核心의인 山林의 定義에 矛盾이 있고 限界 確定에 混亂이 있다면 違法이 아닌 犯罪을 造成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民衆와 國民의 基本權利인 自由를 侵害하는 重大한 過誤를 저지르게 된다.

韓國山林法은 第二條에서 山林의 定義를 明示 하고 있으나 그 內容에 收錄된 法條項은 國土의 全面積 中에서 農地 住宅地, 街路 其他를 除外하고는 全體를 山林法의 適用 範圍內에 採擇한 過慾的인 同時 山岳과 原野를 山林에서 除外하면서 그 限界를 規定하지 않았음으로 山林 以外의 土地生産事業과의 競合對立이 되어 農業近代化作業에 蹉跌을 주는 同時 法第二條의 精段 過慾의 內容과 後段의 除外된 山岳 原野間에는 許多한 矛盾을 內包하고 있어서 一線 實務者間에는 統一性을 喪失하고 適用者에 따라 場所와 時期와 相對에 따라 適用 解釋을 달리 하여 終末에는 地目主義까지 引用하는 混亂을 惹起하게 되어 厄을한 犯罪者와 所有者에 對한 지나

干渉壓과 干渉으로 山林事業의 不振性을 助長 하는 同時 業者의 橫暴을 造成하는 實情에 있음으로 山林의 定義와 矛盾을 吟味 考察하여 是正의 基本을 마련하고 겨 한다.

二. 森林과 山林

日帝時의 用語로서는 「森林」을 廣用하였으나 解放以後에는 「山林」을 廣用하고 있다. 그 用語의 適用範圍는 어떠한가 糾明하고 山林法의 制定精神을 찾아서 그 適正을 期할 必要가 있다.

林業의 事業의 對象인 林地와 林木을 森林 또는 山林이라는 語彙를 使用하면서 表現하고 있다.

森林에 對하여는 많은 學者들 사이에 論述 發表된 것이 있으나 山林에 對하여는 古文記 또는 實錄 등에서 多分히 使用하고 있을 뿐이고 開化以後에는 所謂 Forest를 山林이라고 解釋한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諸般 文記나 法條文 等에서는 山林이라는 語彙를 多分히 使用하고 있는 것은 特異한 事實이다.

그러나 解放以後의 林業이 그 事業對象에 變化가 있어서 語彙를 變更한 것이 아니고 또한 解釋을 달리한 까닭에 起因된 것이 라고도 생각되지 않으나 森林을 버리고 山林으로 代替한 直接의인 要因은 日帝가 使用했던 森林이라는 語彙에 反하여 우리는 山林이라는 語彙를 使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러나 學問的인 立場에서 森林과 山林을 異文同意라고 할 수는 없고 日帝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事理에 어긋난 語彙를 無理하게 使用할 수도 없는 것이니 森林과 山林의 사이에는 區分과 限界가 있어야 하고 그 限界 差異로는 彼此間에 範圍와 制限이 있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森林의 解釋과 意義에 對하여는 많은 學者가 論述한 바가 있으나 그 代表的인 것을 林業辭典에서 引用한다면 다음과 같다.

어느 程度의 넓이를 가진 面積 위에 林木이 生育하여 있어야 하되 그 林木의 數가 많고 적은 程度에 따라 林木 相互間에 影響을 줄수 있는 크기의 林木集團을 意味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解釋意義는 土地와 林木을 合하여 總稱하는데 核心이 있지마는 樹木의 數의 多過程度에 따라서 區分의 對象으로 삼고있는 것 만은 事實이다.

山林에 對한 解意는 正確한 解明을 한 文記 또는 論述을 찾아 보기 어려우나 解放以後를 契期로 하여 各方面에서 多分히 使用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고 山林亦是 土地와 林木을 總括한 語彙인 同時에 面積과 林木의 多寡程度에 따라서 區分의 限界를 삼는 것도亦是 森林과 同一한 것이다. 그러나 森林과 山林의 兩語

彙間에서 구별여 差異點을 찾으려면 森林의 對象인 土地는 傾斜의 有無 肥瘠의 程度等 土地利用의 價値와 限界를 區分함이 없이 廣範하고 概括的인 土地를 林地로 使用하는 것을 意味하는데 反하여 山林은 그 對象 土地自體가 所謂 山地의 土地에 局限되고 一般農業이나 其他 收益性, 土地 利用에 使用할 수 없는 林業用 土地를 意味한다고 解釋하지 않을 수 없다. (山林法 第二條 ②項에서 山岳과 原野를 除外하였음)

그러므로 山林은 森林보다 그 利用 範圍와 限界가 좁고 林業經營의 地域的 範圍도 完全히 山地의 土地에 局限되므로 林業에서 特殊性의 하나인 農業用 土地로 利用 할수 없는 土地(傾斜 土質 土性關係)만을 林業用 對象土地로 使用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 山林의 限界는 山林地域에 局限하여지는 것이 된다. 以上과 같이 森林과 山林以外에도 林野라는 語彙가 日帝時에 使用된 것이니 이는 森林의 (林)字와 原野의 (野)字를 分離하여 成語한 것으로서 日帝는 韓國에서 白國의 移民을 定着시키려는 對象 土地確保를 爲하여 開墾過地로서 放置狀態에 있는 所謂 荒蕪地인 原野地域에 着眼하고 이를 森林과 同一하게 取扱함으로써 私有財產인 個人 林地에 國權의 干渉을 마음대로 하여 韓民族과 移民日人과의 갈력을 彈壓으로 調整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었고 林野라는 語彙는 가장 適正한 用語이었다. (舊 森林法第一條 森林令施行規則 六條, 七條)

三. 山林의 定義

林學的인 山林의 定義는 山林樹木이 支配的으로 植生을 이루고 있는 土地를 指稱하는 것이며, 林業을 實施하려는데 必要한 對象土地이고 場所이며 同時에 山林法을 適用하려는 範圍의 對象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育林學의 定義는 林地와 林木을 總稱 하면서도 林內의 落葉과 落枝 또는 地被草木類는 勿論 林內에 棲息하는 動植物 外에 微生物 또는 無生物까지도 總和하여 그것이 有機的으로 連關性을 가지고 生物的인 循環現象을 일으키는 有機體의 集團狀態를 意味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 主要한 主要因으로서는 林地와 林木에 있는것은 틀림이 없다.

以上과 같이 規定하는 山林의 定義는 山林成立을 規制한데 不過하고 그를 山林法 其他 法條例에 直接 適用할 때에는 國民의 義務와 權利를 規制하려는데 많은 難點과 無理가 介在하고 있다. 그 難點의 主要因은 山林法이 私有財產인 私有林에 對하여도 國權은 干渉할 수 있고 所有者에 對한 義務와 協調를 規制하고 要求할 수 있는 特殊性을 가지고 있음으로 適用範圍에 無理가 있다면 本意인 被害者와 無고한 犯法者를 造作할 靈感性이 多分히 있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定義의 核

心인 樹木이 支配的으로 植生을 이루고 있는 土地를 山林이라고 하는 까닭에 土地의 廣狹에 따르는 問題點과 庭園樹木等도 山林法의 適用範圍에 屬함으로 特別學校庭園 또는 比較的 大邸宅의 庭園等도 山林法의 適用範圍에 있다면 그間に 無理한 要因이 許多히 많은 것이다. 特別 果樹園에 있어서도 一定한 面積위에 果木이라는 樹木이 支配的으로 植生을 이루고 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나 山林法의 適用이 可當치 않다. 林木의 培養에서는 枝打, 落葉採取를 嚴禁하는데 反하여 果樹園에서는 剪定이라는 枝打作業이 必須 要件인 것이다. 兩者間에는 서로 容納 할수 없는 것이며 不適當方法이고 不常한 定義가 되는 것이다. 그 限界의 確定을 爲하여 많은 學者間에 잇갈린 學說을 發表 主張한바있으나 總括的이며 適正한 定義의 確立을 成案하지 못하고 있으니 立法上의 難點은 各學說의 適正採擇과 適用의 範圍와 限界 確定에 있으니 代表的인 學說 몇가지를 紹介한다면 다음과 같다.

1. 林叢說

現在 一定한 土地 위에 樹木이 叢生하여 있으면 이를 山林이라고 規定하려는 主張인데 이는 土地 위에 恒常 林木이 叢生하여 있을 때에 限하여 可能한 主張인 것이다. 적은 面積 위에 幼稚樹가 叢生하였거나 草生地에 孤立木이 散生한 土地는 林木 相互間의 影響을 받을 만한 鬱閉度를 維持하지 못하는 狀態이기 때문에 山林이라고 規定하기가 困難한 뿐 아니라 極端的인 境遇인 伐採跡地 같은 土地는 昨日까지 嚴然한 山林이었으나 伐採를 完了한 今日에 있어서는 山林이 아니라고 規定하여야 할 것이나 林叢說의 不合理性이 이에 있는 것이다.

2. 目的說

一定한 土地위에 現在로서는 林木의 有無에 關係없이 今後 林木 또는 林產物을 培養할 目的下에 諸般計劃이 確立되어서 林木또는 林產物의 培養에 提供하기로 作定이 된 土地를 山林이라고 規定하려는 主張인 것이다. 本主張은 土地利用 目的을 前提 條件으로 하고 法的 對象地의 取扱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利用 目的의 決定과 計劃樹立의 意思決定은 所有者 自身이거나 또는 大規模의 國家施策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特別 우리나라와 같이 山林 全體가 荒廢한 國家에서는 山林復舊를 爲하여 또는 國土의 保全을 爲하여 國家는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고 그 意思와 目的下에서 山林地域과 農用林 또는 開墾適地를 確然히 區分하고 山林地域에 限하여 法的 對象地로 取扱 하여야할 關係로 目的說을 適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나 本主張에 先行

되는 것은 利用 區分과 地域區分 事業인 것이고 筆者가 主張하는 國土의 綜合計劃이 本主張과도 合理性을 가지는 것이다.

3. 地籍說

林木의 有無에 關係없이 國家成立의 三大要素의 하나인 國土를 國家的 立場에서 利用狀態를 明確하게 區分하고 그 土地의 價値 利用狀態와 所有 權利의 保全等을 國權에 依하여 保障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依하여 徵稅의 基準을 삼고 있는 公的帳簿가 土地臺帳과 林野臺帳이니 그 臺帳에 地目(田, 畵, 埜, 林, 等) 利用되고 있는 現況表示이 林으로 되어 있으면 臺帳面의 區分 現況에 基本을 두고 現地의 狀態와 土地의 廣狹이나 林木의 有無 또는 林木이 相互間의 影響力에 關係없이 오직 地目이 林으로 되어 있다는 事實만으로 그 土地를 山林으로 規定하고 法的 對象地로 取扱하려는 것이다.

日帝時의 基本法인 森林令에서는 本主張을 採擇하여 所謂 地目主義에 依하여 現地의 狀態에 關係없이 一律的으로 法的 對象에 適用한 것이나 當時의 犯法行爲에 對한 捜査는 現地의 狀態 調査를 하는 것이 아니라 臺帳調査를 함으로써 法的 對象의 確定與否를 決定한 것이다. 더욱기 日帝는 森林令 施行規則 第七條에서 原野도 山林으로 取扱한다고 規定하고 森林以外的 原野인 未立木地와 草原地帶 卽 開墾適地인 荒蕪地도 森林으로 取扱하여 森林과 原野를 總稱하여 林野라는 語彙를 使用한 것이며 그들에 依하여 調査作成된 林野調査나 土地調査에서도 地目主義에 依하여 査定된것을 回想하면 現在 山林面積 674萬町步中에는 開墾適地인 荒蕪地面積이 內包되어 있고 또한 森林令의 適用範圍를 現耕作地와 埜地, 道路, 河川以外的 全地域에 擴大한 것은 그들의 對峙植民에 必要한 移民用土地를 所謂 荒蕪地에서 確保하려 하였고 移住한 日人과 韓人間의 軋轢을 豫想하여 韓人을 制壓하고 日人을 扶助하려는 法的 根據로서 私有財產에 國家權力이 作用 할 수 있는 特殊法인 森林令을 背景으로 造作한 野望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

4 現行山林法의 山林定義

現行山林法 第二條에서는 山林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第二條)

1. 本法에서 山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但 農地, 住宅地, 街路, 其他法令이 定하는 土地와 林木은 除外된다

(1) 集團的으로 生育하고 있는 木竹과 草生地

(2) 前號의 土地를 除外하고 木竹의 集團의 生育에 使用하게 된 土地

(3) 集團의 으로 生育한 木竹이 一時 喪失된 土地
2. 山林이 아닌 山岳 原野 其他의 土地에 對하여도 關涉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法의 全部 또는 一部의 規定을 準用 할 수 있다

以上 條文에서 (1)은 林叢說을 規定한 것이고 (2)는 目的說을 採擇하였고 (3)은 林叢說中에서 代探跡地를 規定한 것이다. 또한 但書中에서 農地와 住宅 街路 其他의 特殊地域의 指定은 山林法 施行令 第一條에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山林法 第二條 第一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山林에서 除外되는 土地와 林木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果樹園·茶園·養樹園. (2) 林木이 生育하고 있는 建物牆內의 土地 (3) 林木이 生育하고 있는 田畝의 畦畔과 街路樹가 生立하고 있는 道路

以上 法條文에서 除外된것은 果樹園과 各種養苗圃場 및 울타리안의 庭園樹外에 논과 밭 등의 樹木과 街路樹만이 除外된 것이고 其他의 全體 樹木과 그 土地는 山林으로 取扱하려는 基本法制定의 意圖가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이 上記한 特殊土地와 林木을 除外하고 其他 全體土地와 林木을 山林으로 規定 하려는 點이 現實의 으로 一線職員들이 山林法의 運營에서 隘路가 되고 있는 點이며 그 矛盾과 取扱의 不便을 呼訴하면서 法의 補完과 簡素化를 熱望하고 있는 點인 것이다. 다음에 重要한 몇가지를 紹介한다.

(1) 農用林地에 對하여 法的制限이 過度하게 甚하다 農用林은 營農에 必要한 林產物을 圓滑히 供給하기 爲한 附隨의 營農의 支援措置로서 燃料 肥料 其他 小用材 등은 營農上의 必要性에 依하여 時期와 場所와 數量이 決定되는 것이니 이에 맞아서 제때에 供給할 必要가 있는데 이를 許可制로 하는 것은 營農支援이 아니라 農業과 林業을 分離하여 農用林의 性格을 抹殺하는 結果가 된다. 다만 林業의 立場에서는 山林荒廢와 林相復舊에 重點을 두고 있는 까닭에 山林의 開放을 躊躇하고 山林所有者에게 完全利用을 還元하지 않고 있는 感이 있다. 그러므로 農用林地는 그 本來의 使命을 다하도록 完全히 營農에 還元하고 林業에서 分離하는 同時 林相維持에 對하여는 所有者 自身이 決定하도록 別段의 對策을 講究할 것이다.

(2) 山林面積에서 原野面積의 分離가 時急하다.

現在 山林面積 674萬町步中에는 日帝의 野慾 充尼을 爲하여 査定 算入한 原野面積인 開墾適地가 內包되어 있으며 韓國의 現實은 食糧의 自給自足을 爲하여 또는 輸出增進을 爲한 資源增産을 爲하여 耕地擴張은 民族의 宿望이고 絶對的인 要件인데 鑑하여 所有者로 하여

금 土地利用 意慾을 鼓吹하며 開墾을 促進하는 것은 民族의 不動의 姿勢이며 國家의 中軸 政策인데도 不拘하고 山林施策은 이에 逆行하고 있다는 事實을 明確히 認識하고 恒常 開墾과 牧野와 山林 三者競合을 止揚하고 建設의 으로 國論의 統一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日帝가 自己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開墾適地인 原野面積을 山林에 統合하여 實施한 林野調査의 結果를 無條件 無修正으로 模範踏襲하고 있는 것은 山林政策의 盲點인 것이며 다같은 農林長官 隸下機關으로 있으면서 法令과 法令의 強力性으로서 對決하는 事態는 時急히 止揚하고 胸襟을 털어 놓고 國論統一에 歸一되어야 할 것이다.

(3) 果樹園의 限界가 不明하다.

長久한 期間에 獎勵하여 造成한 林叢地帶의 優良林地에 造林한 特殊樹種인 밤나무 호도나무 감나무 등은 用材本位로 取扱하면 確實히 山林이지 不是 樹實採取를 目的으로 하면 嚴然히 果樹園이 아니라 그 限界는 所有者의 意思에 따라 果樹園 또는 山林의 限界가 確定되는 것이니 法的 適用性 矛盾은 論外 餘地도 없다.

(4) 울타리 안의 庭園의 意義

牆內의 土地에 樹木이 生育하는 庭園樹가 法適用에서 除外되고 있으나 庭園의 範圍와 限界가 不明하다. 例컨대 建大 70萬坪 校地에는 20餘町步의 山林地域이 있고 또한 高大의 後側 山林地域과 成均館大學의 後側 山林 등은 嚴然히 校地의 一部分이며 牆內의 山林이 면서 學校 當局의 發展上 必要하면 林內에 校舍 또는 寄宿舍 같은 建物를 築造한 것이니 確實히 庭園의 一部分이기도 하다. 따라서 每年 春秋季를 通하여 施行되는 校內 美化作業은 樹木의 移植과 伐採를 相伴하는 것이니 이는 山林法의 適用을 받을 것인가? 또는 庭園으로서 除外될 것인가 判定이 困難하다. 더우기 昌慶苑의 山林 또는 秘苑의 山林 등을 擴大推想할 때 이와 같은 形態의 山林이 地方에서 名勝古跡과 寺刹境內 등에 그 類似한 例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5) 以上과 같은 林叢說의 矛盾을 補完하기 爲한 方法이 目的說이나 目的說의 土地利用計劃과 目標의 方向이 營林計劃 등의 編成으로 明示 되어 있다면 別問題이지 不是 農用林地 其他 特殊使命을 가진 土地에는 計劃의 主體가 所有者에게 있고 法的 裁量範圍內에 있지 않으므로 犯法 行爲에 對한 法的 適用性은 恒常 所有者의 計劃과 意思에 依하여 左右되고 所有者의 犯法 行爲에 對하여 制止力을 喪失한다

(6) 山岳과 原野를 除外한 矛盾

山岳과 原野는 山林에 隸屬되지 않는다고 明記(法 第二條 (2)項)하고 있으나 山岳은 高山峻嶺의 岩石地帶인 除地地域을 指稱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岩石地帶라 할지라도 適當한 程度로 林木이 生育하고 있는 것이

面積의 廣狹과 林木數의 多小에 따라 本法의 適用 範圍가 策定될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除地는 林業用으로 不可用土地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林業經營面에서 除外된다고 하였을 뿐이고 林業用 對象土地가 아니라 는 語彙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林內에서 生産되는 土石은 嚴然한 產物로서 取扱하여 山林法 第48條 規定에서 國有林內 土石 採取의 限界를 明記하고있으면서 이를除外한다는 것은 前後矛盾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한 山岳地帶의 岩石地는 林木의 育成上에 不可用土地일 뿐이고 山林의 對象林地中에 包涵하여 取扱하는 것이 正當한 解釋이며 同時에 이와 類似한 大濕地帶 또는 明砂十里와 같은 砂質 地帶와 또 砂礫質地帶等도 山岳에 準하여 除外될 것인지 推理는 限 없는 것이다. 原野의 適用性에 있어서도 法第2條2項에서 山林의 適用範圍에서 除外된 것이나 法第2條에서는 果樹園 各種養苗圃場 및 논과 밭쪽의 林木과 街路樹 만을 除外한다 하여 除地의 立木地全體를 包涵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山林法 自體가 山岳과 原野의 存在를 當然히 山林에서 除外되는 事實로 取扱하는 것은 前後의 矛盾이 있으며 이와 相伴하여 重大한 未備狀況은 山林의 對象土地와 原野와 山岳의 限界 條項의 未定인 것이다. 山岳에 類以한 大濕地, 砂質의 海岸林 砂礫質地帶 等の 限界 確定과 山林과 原野의 限界는 傾斜, 利用度 地質等에 依하여 區分될 것이나 그 限界制定은 極히 困難할 것이고 또한 그 制定 없이는 山林法의 運營은 不可能에 屬할 것이다.

(7) 其他 桑園, 牧畜地等의 取扱은 山林法의 制定 精神과 恒常 適合되고 對立되는 것이며 農業의 近代化 作業에서 先驅의 條件인 耕地擴張은 食糧增産과 輸出產業의 振興을 爲하여 不可避한 事項인바도 不拘하고 그 限界에 規制와 限界가 없다는 것은 該當事業을 否認 抹殺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면 桑園이나 牧畜地는 田作地의 一部에 造成하는 것으로서 山林內에는 介入 不許한다는 精神下에 山林法 第2條의 定義가 規制되었다면 確實히 山林法의 過嚴의 規制는 韓國이 當面하고 있는 諸般 政策에 協調의 規制이기 보다는 도리어 農業近代化 作業에 障害과 蹉跌을 주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四. 結 論

法이라는 것은 國家의 事業인 山林事業에 對하여 國家權力의 作用이며 支援方法이다. 山林事業에 對한 運營面에 國民의 協助과 國民의 義務履行을 強調하고 所有權利에 對한 保全方法이며 國家 權能이 私有權에 對한 干涉方法이기도 하나 國家的 見地에서 또는 法의 制定目標에 에서 어디 까지나 發展의 干涉이며 支援方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山林法의 制定에는

國家權能이 山林事業에 指向하는 基本方向과 原則에 立脚하여 무엇을 規定하고 무엇을 制定함으로서 山林事業을 支援하고 協助할 수 있는가를 明確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法制定에 先行되는 것은 山林事業의 運營 基本方向이고 原則이 作定되어야 하며 그 基本方向과 原則의 確定에는 韓國林政이 處하고 있는 現實을 土臺로 理論이 合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山林法에는 累次 強調한 바와 같이 基本方向과 基本原則이 없으며 指向하는 目標 自體도 明確하지 못하고 오직 山林綠化 만을 規定하였으니 山林綠化의 基本的인 理論構成도 오직 植樹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基本原則과 方向인 目標가 明確치 못한 山林法은 國權에 對한 支援要求도 中心點이 없이 이것과 저것을 區區히 羅列할 뿐이니 林業說도 좋고 目的說도 좋으니 이것과 저것等을 全部 網羅하여 두면 그 中에서 어느 것이든지 쫓아 또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式의 山林의 定義이고 法制定의 方法인 感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部를 網羅한다면 網羅해 놓은 가운데에서 矛盾이 생기고 그 矛盾에 依하여 自體를 拘束하고 他事業에 支障을 주고 또한 競争과 對立을 일으켜서 全體國家機能에 影響을 준다는 事實은 極히 不當한 處事이다.

그러므로 山林法은 國民經濟發展을 基幹方向으로 삼고 資源을 增殖하고 林相을 整備하는 原則下에서 他事業과 有機的인 連關性을 維持하면서 山林綠化를 이룩하고 所有者의 權利를 保障할 수 있는 原則을 模索하여 山林의 定義를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日帝의 林野調査에서 查定된 674萬町步中에서 開墾하여 耕地化할 수 있는 適地는 農耕地로 開放하고 牧野地와 農用林地들도 그 適否를 가려서 完全히 還元하는데서 所有者로 하여금 土地利用의 意慾을 鼓吹하여 國土의 完全利用을 期할 것이다.

反면에 農耕地 利用이 不可能한 所謂 山林地域은 山林事業의 對象土地로 確固히 規定하고 國家施策面에서 山林 施業地域을 計劃 確定함으로서 目的說을 採擇하여 全地域內의 諸般 營林行爲에 對하여 山林法의 適用地域으로 確定하는 것이 賢明한 方案이 될 것이다. 따라서 森林과 山林의 限界도 明確하여지고 山林의 語彙를 使用하는 意義는 合理性을 가지게 될 것이다

Summary

Chapter 1 in Article 2 of forest law defines the definition of forest, but its meaning is so wide that it itself contains a lot of contradiction in it. And it loses legal adaptation which gives a lot of hindrance with criminal investigation. Furthermore, it has made extension

of farming lands, and promotion of livestock which are most important matter to be solved in Korea retarded. Such an act made us bewildered to adapt concerned laws being applied to our law.

This is to form a basic principal and define its correction. It is required that forestry of Korea should be utilized

valuable and reserve forest region instead of definition totally, and the purpose of reforestation should be clear.

In addition to above, it is required to define what forestry is, in the direction of reconstructing forestry better in Korea.